

# 인쇄물수출 이렇게 합시다 ⑤

## - 인쇄물 생산절차 및 통관, 운송<2>

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내수시장의 불황을 타개하고자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인쇄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. 그러나 이 업체들 중 상당수는 해외시장 개척·인쇄물 수출과 관련한 사전 지식과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. 이에 본지에서는 (재)서울인쇄센터가 발간한 '인쇄 수출 매뉴얼'을 시리즈로 연재,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. <편집자 주>

(지난호에 이어)

### 수출화물 해상운송

- 수출화물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선적되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수출자 입장에서 원가상승 및 수출 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물류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.
- 수출물품을 적기(just-in-time)에 생산하여 수입자가 L/C상에 선박회사를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자는 선적스케줄을 조회하여 해당선사에 선적요청을 하고 운송회사를 통하여 선사와 계약되어 있는 CY로 화물을 운송함과 아울러 세관에 도착보고를 하고 선적 완료 후 출항한다.

### 참고사항

화주의 창고를 떠난 수출화물은 관련 노드(선사, 운송회사, ODCY, CFS, 전용부두 등)를 거쳐 해당 선박에 선

적 되어 출항함으로써 일련의 선적 절차가 종결된다.

### 선적예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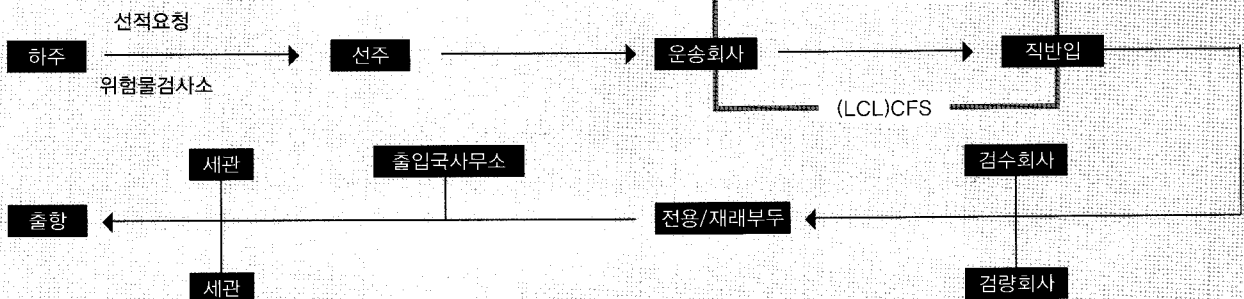
- ① 화주는 수출품을 선적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회사에 선적을 요청하고 수출품을 운송회사에 운송의뢰하여 선적지 CY에 입고시키게 된다.
- ② 선적요청 방식으로는 상업송장이나 포장명세서를 FAX로 송부하여 신청하는 방식과 전산을 이용하여 EDI로 신청하는 방식이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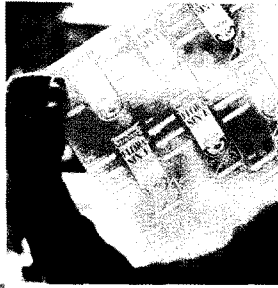
선적스케줄조회 : 한국하주협회(www.Shippersgate.net) 웹사이트 이용

### EDI(Electronic Data Inter Interchange 전자자료 교환)

인편이나 우편에 의존하는 종이 서류 대신 컴퓨터가 읽을 수 있도록 서로 합의하여 표준화된 자료인 전자문서(Electronic Document)를 데이터 통신망을 통해 컴퓨터

절차도해





## 인쇄수출 매뉴얼



터와 컴퓨터간에 교환하여 재입력 과정없이 직접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보전달방식을 말한다.

### 검량회사 업무

- ① CFS에 도착한 화물은 선박 운송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화물에 대한 중량 및 용적 측정과정을 거치게 되며, 이를 수행하는 회사가 바로 검량회사 및 검수회사이다.
- ② 선박운송비는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에 따라 산정되며 LCL화물의 운임적용은 선사에서 관리하고 있다.
- ③ 화주가 선하증권을 선사로부터 인수할 때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은 CFS Charge, THC(Terminal Handling Charge), Wharfage(부두사용료) 등이며, 이는 선사에 따라 어느정도 차이가 있다.

### 위험물 검사신청서류

- ①위험물검사신청서 ②상업송장 <화주 → 검사소> ③포장명세서 ④위험물컨테이너수납증 <검사소 → 화주>
- 위험물 : 일회용 부탄가스, 페인트류, 화공물질 등 한국 해상위험물검사소 : (02)776-1631

### 선적예약서류

- ① 선적요청서 ②상업송장 ③포장명세서 ④신용장사본
- EDI방식에 의한 선적요청/응답
- ①SHPREQ (Shipping Request : 선적요청서)

②SHPRES (Shipping Response : 선적요청응답)

③BLADVI (Bill of Lading Advice : 선하증권발급통지)

### 항공운송

항공화물운송은 화주가 직접 항공회사와 거래하지 않고 항공화물 대리점 또는 호전 업체를 이용하여 기적, 운송을 하고 항공화물운송장(Airway Bill)을 발급(Bill of Lading)

- 양도성, 유통성 유가증권
- 선적시 : 선적완료 후 발행
- 기명식 혹은 무기명식이며 화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가능 (Air way Bill)
- 유통이 금지된 '비유통(Not-Negotiable)' 증권으로만 발행
- 수하식 : 항공회사 창고에 화물도착 후 발행
- 기명식이며, 화물인도 전에는 소유권 이전불가

### 보험

#### 해상적하보험

- ① 매매조건과 적하보험
- 매도인에게 부보의무가 있는 매매계약조건
- ① C. I. F. 조건
- ② C. & I. 조건
- ③ Ex Ship, Ex Quay 기타 유사한 조건(양륙지인도조건)



<b>TOPLINE</b> 333 Seonyu Building 15/F, 33 Seonyu-ro, Chung Gu, Seoul, Korea TEL: 02-767-6621 FAX: 02-767-6252 www.topline.co.kr	<b>TOPLINE</b> INCORPORATED IN THE REPUBLIC OF KOREA B.L. NO. 121-2325220 Reg. No. 142
<b>INSURANCE COMPANY</b> ACE AMERICAN INSURANCE COMPANY 1001 F STREET, N.W., WASHINGTON, D.C. 20004 TEL: 202-462-2000 FAX: 202-462-3000	<b>INSURANCE COMPANY</b> ACE AMERICAN INSURANCE COMPANY 1001 F STREET, N.W., WASHINGTON, D.C. 20004 TEL: 202-462-2000 FAX: 202-462-3000
<b>INSURANCE COMPANY</b> ACE AMERICAN INSURANCE COMPANY 1001 F STREET, N.W., WASHINGTON, D.C. 20004 TEL: 202-462-2000 FAX: 202-462-3000	<b>INSURANCE COMPANY</b> ACE AMERICAN INSURANCE COMPANY 1001 F STREET, N.W., WASHINGTON, D.C. 20004 TEL: 202-462-2000 FAX: 202-462-3000
<b>INSURANCE COMPANY</b> ACE AMERICAN INSURANCE COMPANY 1001 F STREET, N.W., WASHINGTON, D.C. 20004 TEL: 202-462-2000 FAX: 202-462-3000	<b>INSURANCE COMPANY</b> ACE AMERICAN INSURANCE COMPANY 1001 F STREET, N.W., WASHINGTON, D.C. 20004 TEL: 202-462-2000 FAX: 202-462-3000
<b>INSURANCE COMPANY</b> ACE AMERICAN INSURANCE COMPANY 1001 F STREET, N.W., WASHINGTON, D.C. 20004 TEL: 202-462-2000 FAX: 202-462-3000	<b>INSURANCE COMPANY</b> ACE AMERICAN INSURANCE COMPANY 1001 F STREET, N.W., WASHINGTON, D.C. 20004 TEL: 202-462-2000 FAX: 202-462-3000

2) 수출보험

보험종목	주요내용	보험계약자
단기수출보험	결제기간이 2년 이내인 단기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그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	수출자
수출어음보험	외국환은행이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환어음을 그 발행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 그 환어음의 만기에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된 금액 또는 환어음에 대한 소구를 받아 지급한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	외국환은행
중장기수출보험	수출대금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수출대금 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 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	수출자, 외국환은행
수출보증보험	금융기관이 해외공사계약 또는 수출계약 등과 관련하여 수출보증을 한 경우에 보증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입게 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	외국환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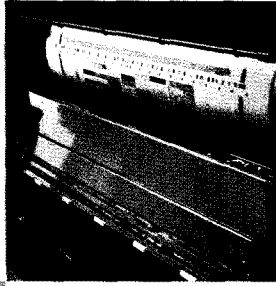
해상보험증권 사본

- 매수인에게 부보의무가 있는 매매계약조건
- ① F. O. B. 조건
- ② F. C. A. 조건
- ③ C. & F. 조건
- ④ F. A. S. 조건
- ⑤ Ex Works, Ex Warehouse 기타 유사한 조건

수출 통관절차 및 대금 결제대금  
결제방법에 따른 수출절차

1. 환환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

- 일람출금신용장(at sight L/C):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의 지급기일이 일람출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로 환어음이 지급지에서 지급인에게 제시되면 즉시 수출대금이 지급되



## 인쇄수출 매뉴얼



는 것

- 기한부신용장(usance L/C):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출대금이 지급되는 조건의 수출로서 이 경우 수입상이 일정기간 동안 수출화물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어음전액을 결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.

### ● 수출절차

매매계약 체결 → 신용장 개설의뢰 → 수입자 거래은행의 신용장 발행 및 수출자 거래은행으로부터 신용장 송부 → 수출자에게 신용장 내도 통지 → 보험가입 및 보험증권 발행 → 수출통관 후 수출 선적의뢰 및 선하증권 발급 → 화환어음 매입의뢰 및 매입은행의 어음매입대금 지급 → 어음 및 운송서류 송부 → 결제은행에 어음대금 상환 청구 → 수입자에게 운송서류 내도 통지 → 개설은행은 수입자로부터 수입대금을 받고 운송서류 인도 → 선박회사가 수입자에게 화물 도착 통지 → 수입통관 후 수입자는 선박회사에 선하증권을 제시하고 화물 인도

## 2.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수출

- D/P 조건: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선적하고 나서 선적서류와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at sight 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게 되며, 추심의뢰를 받은 후 추심은행이 어음지급인에 대하여 선적서류를 대금지급과 동시에 인도하여 주고 그 대금을 추심은행에 송금하여 주면 수출자는 대

금을 영수하게 되는 방식

- D/A 조건: 추심은행이 수입업자에게 수출자 발행 기한부환어음을 제시하면 수입업자가 어음상에 'Accept' 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함으로써 추심은행이 선적서류를 인도하여 주고 그 어음의 지급만기일에 어음지급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추심은행에 송금하여 주면 수출자가 대금을 영수하는 방식

## 3.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

- 사전송금방식 수출: 수출대금을 물품선적 전에 외환, 수표 등 지정영수통화로 표시된 대외지급수단에 의하여 미리 영수하고 일정 기일 내에 이에 상응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
- 대금교환도조건 수출: 물품의 인도와 동시에 또는 인도 후 360일 내에 수출대금전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영수하는 거래
- 현물상환방식(COD)
- 서류상환방식(CAD)

## 통관 절차

현재는 EDI(Electronic Data Interchange) 방식의 수출통관절차를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써 수출물품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통관하고 있으며, 신문 등 보도용품이나 카탈로그 등은 더욱 간편한 방법으로 수출통관을 할 수 있다. <다음호에 계속> ☺